

기금관리규정

제정 2012. 09. 2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전북새만금산학융합원(이하“융합원”이라 한다)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설립 후 정부, 지방자치단체, 대학, 기타 법인 및 개인이 출연한 토지, 건물 등 부동산
3.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4.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5. 매 회계연도 이사회에서 의결한 적립금

제3조(기금의 운용) ① 제2조에 의거 조성된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치 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기타의 방법으로 운용하되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원금의 실질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재원) ① 융합원의 운영재원은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사업수입, 기타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② 운영재원은 융합원의 설립목적 및 재무회계규정에 적합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제5조(기금관리대장 비치) 원장은 기금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 사항을 상세히 기록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보고) 원장은 매회계년도 결산기 직후에 개최되는 이사회에 당해 연도 기금운용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운용계획) ① 원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구성한다.

1. 운용방침

2. 기금현황
3. 기금운용계획(수입계획, 지출계획 등)
4. 기금조성규모

제8조(기금운용계획 변경)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원장은 세부항목의 내용을 변경하고 추후 세입·세출예산 결산 시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재정보증) 기금회계 관련 직원의 재정보증에 관하여는 융합원 인사규정 제60조 및 제61조를 준용한다.

제10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고, 기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융합원의 노후화된 시설장비의 대체 및 수선
2. 민간 대응자금이 필요한 신규 사업과 관련된 민간부담금
3. 기타 융합원 운영 및 고유목적사업

부 칙(2012.09.27.)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